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향상 지원〉

■ 김우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67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향상 지원(안 제6조제2항제7호 신설 등) ..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우영의원 등 25인

나. 발 의 일 : 2026. 1. 12.

다. 회 부 일 : 2026.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사회 전반으로의 확산에 따라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역량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가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디지털취약계층 교육지원, 인공지능 윤리 교육, 평생교육 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7호,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향상 지원(안 제6조제2항제7호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6조제2항제7호 신설)
- 정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21조의2 신설).
 -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제1호)
 - 허위정보 생성·유포의 방지,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제2호)
 -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지원(제3호)
 -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제4호)
 - 그 밖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음(안 제21조의3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6. (생략) <u><신설></u> 7. (생략) ③ ~ ⑦ (생략) <u><신설></u>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6. (현행과 같음) 7. <u>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u>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인공지능 교육의 활성화) 정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u>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u> 2. <u>허위정보 생성·유포의 방지, 저작권 침해 예방 등 인공지능윤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u> 3. 「디지털포용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디지털취약계층

현행	개정안
<신설>	층에 대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관한 교육지원 4. 인공지능 평생교육 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1조의3(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향상 및 윤리적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인공지능 활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의 방법·절차·내용·대상 및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검토사항

- 개정안은 전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정부의 국민 인공지능 활용능력 향상 시책 마련 및 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의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¹⁾을 규정하고 있으나, 특정 대상이 아닌 전 국민의 기본적인 인공지능 활용능력의 함양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고 있음.
- 인공지능기술이 연구 단계나 특정 분야의 산업에서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던 과거와 달리 인공지능 제품·서비스가 점점 일반국민의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개정안과 같이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향상을 위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6조(인공지능 기본계획의 수립)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인공지능 개발·활용 촉진 기반 조성 등에 관한 사항

6의2.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21조(전문인력의 확보)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전문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활용
2. 전문인력의 취업 지원 및 신규 인력유입 활성화 등 고용 촉진
3.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 기회 확대 등 진출 다변화 촉진
4. 전문인력의 국내외 연수 지원 및 국제교류 활성화
5. 전문인력의 근로환경 개선과 처우 증진 등 복지 향상
6. 그 밖에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을 위한 사업

② 정부는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해외 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의 전문인력에 관한 조사·분석
2. 해외 전문인력의 유치를 위한 국제네트워크 구축
3. 해외 전문인력의 국내 취업 지원
4. 국내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해외진출 및 해외 인공지능 연구기관의 국내 유치 지원
5.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지원
6. 그 밖에 해외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한 추진체계로 인공지능 기본계획 및 정부 정책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구체적으로 활용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검정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이미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 시 현행 인공지능기본법 제6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의 이해 및 활용을 위한 교육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공지능 활용 능력에 대한 교육 지원과 그 홍보에 관한 정책도 해당 규정을 통해 포섭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인공지능 기본계획에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실익이 크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현재 인공지능과 관련된 자격으로 국가공인 자격인 인공지능 활용능력 평가 시험(AICE)²⁾을 비롯하여 AI 프롬프트 활용능력(AI-POT), AI 비즈니스 활용능력(AIBT), 인공지능활용능력 등 민간 자격까지 다수의 자격제도가 운영 중에 있음.
- 그러므로, 인공지능 활용능력에 대한 여러 자격제도가 이미 운영 중인 상황에서 인공지능기본법에 별도로 인공지능 활용능력 검정 제도를 운영할 근거를 규정할 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KT와 한국경제신문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공지능 활용능력 평가 시험의 Associate 등급은 국가공인자격이고 그 외의 등급은 등록민간자격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의 인공지능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기본계획 내 관련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 시책 마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